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지정 등을 내용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안 제5조의2 신설, 22조 삭제)

- 1) 양성평등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 시 성별 고려하도록 함
- 2) 기존 22조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규정하고 있던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조문의 순서에 따라 5조의2를 신설하여 규정함

나.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안 제8조의2 신설)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수행 업무를 구체화(정보의 수집, 연계, 통계관리, 활용 등)하고, 구축·운영의 세부사항은 문체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함

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정취소 관련(안 제8조의3, 8조의4, 별표1)

- 1)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 고려사항(업무 수행실적, 전담조직 등), 지정 기간(5년 이내), 지정 절차(홈페이지에 공고) 등 규정
- 2)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별표1)을 정하고, 지정취소 시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생활문화센터의 근거상향(안 제2조제4호), 지역문화실태조사 범위 구체화(안 제7조의2)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6. ~ 3.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생활문화센터

제7조제4항 중 “2년으”를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역문화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관련 제도, 예산 등 지역문화 정책 현황
2. 지역의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등 현황
3.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등 현황
4.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년으”를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정보의 수집 및 전자적 연계
2.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관리
3. 지역문화 정보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5. 그 밖에 지역문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

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정도의 업무 수행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지역문화진흥 관련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을 것
4. 법 제13조의3제2항제7호의 업무의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으며 정보의 수집·관리 구축 및 통계분석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제10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

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2.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
3.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관련 업무

제8조의4(지정 취소) ① 법 제13조의4에 따른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 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생태계의 조성

제22조를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2조)의 제목“(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에 따른”을 “협력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8항) 중 “개의를(開議)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10항) 중 “제9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성

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 중 “별표”를 “별표2”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8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 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2차 이상 위반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으로 보아 그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1항제2호	경고. 다만, 처분권자가 정하는 기간 안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다.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13조의4 제1항제3호	경고. 다만, 처분권자가 정하는 기간 안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비고: 처분권자는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 2) 최근 3년 이내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문화지구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생활문화센터</u>
4. (생 략)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u>2년</u> 으로 한다. ⑤·⑥ (생 략) <u><신 설></u>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3년</u> 이내---. ⑤·⑥ (현행과 같음) <u>제7조의2(지역문화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u>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관련 제도, 예산 등
지역문화 정책 현황

2. 지역의 문화시설, 생활문화시
설 등 현황

3.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역의 문
화예술 단체 등 현황

4.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지역문화 정책수립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
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
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
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
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
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2 년으로 한다.

<신 설>

여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3 년 이내--.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정보의 수집 및 전 자적 연계
2.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관리
3. 지역문화 정보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5. 그 밖에 지역문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신 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8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
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된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
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
연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정도의 업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지역문화진흥 관련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을 것

4. 법 제13조의3제2항제7호의 업무의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으며 정보의 수집·관리 구축 및 통계분석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제10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설>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
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
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문화환경 취
약지역에 대한 지원

2.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
센터의 활성화 지원

3.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
조 제5항 관련 업무

제8조의4(지정 취소) ① 법 제13
조의4에 따른 지정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
13조의4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
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
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지역 내 공정하고 양성평등
한 문화생태계의 조성

6. (생략)

제22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과 제5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위원 1
명이 된다.

<삭 제>

⑤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삭 제>

1.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의 대표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 위원장

3.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

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
는 사람

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
나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⑧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開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⑨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분
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위원
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와 같다.

<삭 제>

② 협력위원회의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개 의 하 고

-----.

④ (현행 제9항과 같음)

⑤ ----- 제4항까지-----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별표2-----.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631